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서류안내

1/2

※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분은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※ 접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이 불가하며,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(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) ※ 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청약자(본인)	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	○	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청약자(본인)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청약자(본인)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원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·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청약자(본인)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청약자(본인)	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		○	복무확인서	청약자(본인)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(※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)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입증 서류	청약자(본인)	-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→ 파견 및 출장명령서(직인날인), 재직증명서 -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- 근로자가 아닌 경우 →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(①, ② 모두 반드시 제출) ※ 유학, 연수(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)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	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※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(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)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
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서류안내

2/2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대상	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청약자(본인)	•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성명 등 전부 표기 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
	○		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※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	○		피부양 직계비속	•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[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]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피부양 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※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 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	피부양 직계비속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<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> *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*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'상세'로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 시	※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				
	○		인감증명서	청약자	• 본인발급에 한함 / 용도 : 위임용(본인발급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위임 불가
	○		인감도장		•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
	○		위임장		•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(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)
	○		신분증	대리인	•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(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)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○	무주택 소명 자료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"소형·저가주택 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서류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
※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, 공통/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
 ※ 서류 접수 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표기'로 발급하여야 하며,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11.26.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
 ※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 ※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※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,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 하면 폐기합니다.